



[2015.11.16.] [

171 , 2015.11.16.,

]

() 044 - 201 - 2432, 2433

1

1 () 「 . 」

2 ()

1. " " . (" ")

2. " " 가 . (" ")

3. " " , 가 (가)

가 (,)

4. " " , 가

3 () 「

7 1 2 (" ") 2

1 2 .

2

4 () 7 2 11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5 (

가)

11

1 가 , 가 , 가 , .

- 가 가 , 가 .
 , 1 가 1 가
 1 가 2 가
 6 (가) 11 2
 11 1 가 .
 1.
 2. 「 」
 3. 「 」
 4. 「 」
 5. .
 7 () 12 3 1 .
 3
 1
 8 () 19 1
 1.
 가.
 가 가 가 .
 2. 1
 1 가 , 가 ,
 9 () 19 2 , 가
 3 .
 1 .
 10 () 20 1 2
 3 26 1
 (" ") .
 1. 4 , 5 6
 가
 2. 4
 3.
 4. , 가 , ()
 11 () 10
 16 10

- 20 3
1. : 가 10 가 9
 2. : () 9
- 2
- 12 () 20 4 20 3
7 7
- 1 11 , 가 , 가 가
- 13 () 9 8 9
1. 10 :
 2. 12 1 :
 3. 16 :
- ") 가 3 7 20 3 (")
Certificate) 20 3 10 (" ") (Transaction)
. < 2014.10.1.>
- 14 () 20 5 . < 2015.11.16.>
1. (3 2 6)
2. ()
3. 가
1 11
- 1.
 - 2.
- 2 8
9
- 15 () 13 1 14 3
가
- 16 () 21 2 3 2 2

- 3
- 4 , 5 6
·가
 - 4
 - ()
 - , ·가 , ()
)
- 가 , 21 2 4
1
()
- 3
- 3 , , , ()
- 17 () 22 1 1 20 12
, ·가
53 (" ")
22 2 , , ·가
2
- 18 () 23 1 ()
" ") 5
1 , , , 6 (" ") 가
, , , , 6
- 23 3 7
1 3
- 18 2() 23 2 1
5
()
- 13
 - 21 가 (Import Certificate)
1

1 (" ")

1. 「 」 3 1 : 2

2. 「 」 2 2 : 7

3. : 「 」 4

1

1

7 2 (

가 1 7

3 ()

2

(檢體)

[2014.10.1.]

18 3(가) 23 2 가 7

4

가

가

5

()

1. 13

2.

3.

가

1

가

가

7 5

가

1

가

가

1

(

"

"

)

가

1

7

2

()

2

2

[2014.10.1.]

19 ()	24 1	8	.
20 (가)	25 1		.
1. 3 1			
2. 9			
3. 11			
4. 27			
5. 36			
1			.
21 (가)		가	25
1		가 20	
	1	가	가 20
	2		가
2			.
22 ()	25 1		가
2 3		가	
1		가	
		가	
23 (가)	25 1		가
가		가 (" "	
) 9		9	
	21 3		24
1 31 4		.	.
		,	,
24 ()	21 3		.
25 2			
1. 가			
2. (.)			
3.			
4. (全文)			
25 ()	25 1		18

2

26 () 26 1
1 31

26 2 1

13

< 2014.10.1.>

1.

2. 27

27 () 26 1 · 3 6
1

9

28 () 26 6

1.

가.

가

가

·가

2.

가.

1

(가)

1

29 () 26 2

1

27

14

(" ")

2

3

1.

2.

3.

4.

5. ()

1

4

30 () 26 3
3 13 ()

1.

2. 27

3.

1

27

29

4

3

31 (가 가) 26 4
" ") 4 가 「 . 」(
1 가

32 ()
26 5 1 15

- 1. ,
2. 26 5
15

- 1.
2.

1 2
14

32 2() 26 2 1 (" ")

9 2
26 2 2 가

- 1. : 30
2. : , , 가
26 2 2 15 2

- 1. 9 2
2. 2
3. 6 2

3 가 9 2
, 2 15 3

26 2 3 9 3

4

[2014.10.1.]

33 ()	27 3
2	21 1
16 2	1
27 4	1
27 5	(不時)
11 2	
1.	
2. 6	24 1 31 4
34 ()	28
	1 16 ()
	1 ()
1	() 가 7
35 ()	29 1
10	
3	
36 ()	31 1
1.	
2.	가
3.	
1	
1.	
2.	가
1 1	3
37 ()	31 4
	8
38 ()	33 1
	17

1. 4 , 5 6
·가
- 2.
- 3.
- 8 9 1
33 1 18
1
- 1.
2. 27
- 3.
- 4.
- 1 3 「 」 36 1
3 29 4
- 4
- 39 () 34 2
1.
가.
2. 1
1
- 40 () 34 2
11
1
- 41 () 34 4
10 , 17
" " " " .
34 4
8
- 42 () 34 5
36 38 " ,
" " " .
- 43 () 35 1
1. :
2. : 1 .

- 44 () 35 2
 ,
 26 35
 " " " " "
- 45 () 36 1 ("
 ") 12
 1 18 2 4 "
 " " " .< 2015.11.16.>
 5
- 46 () 37 1 2
 (" ")
 1.
 2.
- 47 () 37 4 13
 1
- 48 () 38 1
 19 () 44 1
 (" ")
 1. 20 ()
 2. 14
 3. 500g(Mℓ). , 100g(Mℓ)
 1
 38 3 38 2
 7 21 ()
 38 2 (" ")가
 38 4 22 ()
 ()
 1. (" ")
 2.
 3.
 4. 500g(Mℓ). , 100g(Mℓ)
- 49 () 48 1
 10
 , , ,
 48 1 47
 23 ()

	24	()	25
	()		
	38 3	38 4	1
	2		
	48 1	2	14
50 ()			
51 ()			39 2
	3	26 ()	
1. 20		()	
2.			
3. 14			
4. 500g(Mℓ).		100g(Mℓ)	
1			16 2
, 49 1	2	4	
		4	
3			
52 ()	40 1		
가	10	27	
40 2			3
1.			
2.			
3.			
4. 28		()	
5.			
6.			
53 ()	41 2		15
1			
54 ()		41 2	29

1.
2.
1 53 30
2 1
31
1.
2.
55 () 41 3 ,
16
56 () 42 17
57 () 43 1 16
58 <2015.1.6.>
59 () 44 1 18
60 () 44 2
1 31
44 2 32
() 1
1.
2.
3.
4.
2 59 33
61 () 44 3 32
60 2
1 , 59 60
4
3 , , ,

62 () 44 4
34

- 1.
- 2.
- 3.

1

44 4 34

1

- 1.

- 2. 46

44 4

,

60 3

63 (가) 45 3
39 1

3

- 1.

- 2.

- 3. 가

45 3

,

39 1

3

, ,

3

- 1.

- 2.

- 3.

1 2

1 2

1

가

, 65 1

64 () 45 4

- 1. 40 1 가 가

- 2. , , 가 10

- 3. 43 3 ,

1

- 4. 38 39 , ,

37 4

45 5

1. 59

2.

3.

1 3 「 」 36 1

3 33

6

70 ()

1. , , ,

2. 가. 24 ,

. 31 4 . . , ,

3. , ,

4. 29

71 () 56 3 19

1

72 () 5 6

1. . .

2. 3

73 () 3

(3)

1. 3 1 : 2015 1 1

2. 8 , 9 3 : 2015 1 1

3. 18 2 18 3 가 : 2015

1 1

4. 19 8 : 2015 1 1

5. 26 , 27 9 : 2015 1 1

6. 32 2 9 2 : 2015 1 1

7. 35 10 : 2015 1 1

8. 47 13 : 2015 1 1

- 9. 51 : 2015 1 1
 - 10. 53 , 54 15 : 2015 1 1
 - 11. 57 16 : 2015 1 1
 - 12. 58 : 2015 1 1
 - 13. 59 , 60 18 : 2015 1 1
 - 14. 62 : 2015 1 1
 - 15. 63 • : 2015 1 1
 - 16. 64 : 2015 1 1
 - 17. 65 • : 2015 1 1
 - 18. 66 16 : 2015 1 1
- [[2014.10.1.](#)]

< 171 ,2015.11.16.>

1 ()

2 ()

8 1

[별표 1] <개정 2015.11.16.>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厩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별표 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 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 사람의 배설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50° 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열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뭇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는 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석회소다 염화물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마그네슘 암석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펠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_2O_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예: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황	
○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i>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i>Derris spp.</i> , <i>Lonchocarpus spp</i> 및 <i>Terphrosia spp.</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i>Quassia</i>) 추출물	○ 쿠아시아(<i>Quassia amar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i>Ryania</i>) 추출물	○ 라이아니아(<i>Ryania specios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 추출물	○ 님(<i>Azadirachta indic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누룩곰팡이(<i>Aspergillus</i>)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동·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input type="checkbox"/> 인지질(lecithin)	
<input type="checkbox"/> 카제인(유단백질)	
<input type="checkbox"/> 버섯 추출액	
<input type="checkbox"/>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input type="checkbox"/>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input type="checkbox"/>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input type="checkbox"/>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腐熟)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input type="checkbox"/> 물로만 추출할 것
<input type="checkbox"/> 구리염 <input type="checkbox"/> 보르도액 <input type="checkbox"/> 수산화동 <input type="checkbox"/> 산염화동 <input type="checkbox"/> 부르고뉴액	<input type="checkbox"/>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input type="checkbox"/>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input type="checkbox"/> 에틸렌	<input type="checkbox"/>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input type="checkbox"/>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input type="checkbox"/> 규산나트륨	<input type="checkbox"/>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input type="checkbox"/> 규조토	<input type="checkbox"/>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input type="checkbox"/>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input type="checkbox"/>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input type="checkbox"/>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

	<p>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p>
○ 인산철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 파라핀 오일	
○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과망간산칼륨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황	○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천적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성 유인물질(페로몬)	○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뗏에만 사용할 것)
○ 메타알데하이드	○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뗏에만 사용할 것)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비누(Potassium Soaps)	
○ 에틸알콜	○ 발효주정일 것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기계유	○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용성블임곤충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구분	세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식물성	곡물류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과전분을 포함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곡물 부산물 (강피류)	곡쇄류·밀기울·말분·보릿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겨·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
	제약 부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 부산물	
	유지류	옥수수유, 대두유, 면실피유, 채종유, 야자유, 해바라기유, 팜유 및 쌀겨기름	
	박류 (단백질류)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들깨묵·참깨묵·채종박·면실피박·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박·두부박·케이폭박, 팜유박, 글루텐 및 주정박	
	근피류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카, 부 및 당근	○ 곡물류와 같음
	식품가공 부산물	두류 가공 부산물,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	○ 곡물 부산물류와 같음
	해조류	해조분	○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섬유질류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곡류 정선 부산물, 임산 가공 부산물, 볏짚, 보리짚, 그 밖의 농산물 고간류, 풋베기 사료작물, 옥수수 속대, 사탕수수박, 사탕무우박, 감귤박 및 발효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어분·어즙흡착사료에 한함)이거나 유기수산물일 것

	부기물류	골분·어골회 및 패분	○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유지류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광물성	식염류	암염 및 천일염	○ 천연의 것일 것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광물질 첨가물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칼륨·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블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혼합 광물질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만 해당함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구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산미제	젓산, 개미산 등 천연 산미제	○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일 것. 다만, 배합사료에 1퍼센트 미만 사용되는 보조사료 중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해당 보조사료 내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항응고제	활성탄	
결착제	천연 결착제	
유화제	천연 유화제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천연 항곰팡이제	
향미제	천연 향미제	
규산염제	제올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착색제	천연 착색제	
추출제	유기추출물·타우마린·목초 추출물·해초 추출물 및 과일 추출물	
완충제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	갈락토 올리고당, 플라кто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고당, 대두 올리고당, 만노스 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효소제	아밀라제, 알칼리성 프로테아제, 키시라나아제, 피타아제, 산성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중성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및 그 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생균제	엔테로кокка스페시엄, 바실러스코아글란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아미노산제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 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3)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구아검	Guar gum	412	○	제한 없음	×	
구연산	Citric acid	33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구연산삼나트륨	Trisodium citrate	331 (iii)	○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일음료	×	
구연산칼륨	Potassium	332	○	제한 없음	×	

	citrate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	제한 없음	×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	여과보조제
글리세린	Glycerin	422	○	제한 없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할 수 있음)	×	
퀸라야추출물	Quillaia Extract	999	×		○	설탕 가공
레시틴	Lecithin	322	○	제한 없음 (다만, 포백계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할 수 있음)	×	
로커스트콩검	Locust bean gum	410	○	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220	○	과일주	×	
밀납	Beeswax	901	×		○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	청징 (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벤토나이트	Bentonite	558	×		○	청징 (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비타민 C	Vitamin C	300	○	제한 없음	×	
DL-사과산	DL-Malic acid	296	○	제한 없음	×	
산소	Oxygen	948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산탄검	Xanthan gum	415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파자, 샐러드류	×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524	○	곡류제품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525	×		○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526	○	토르티야	○	산도 조절제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	식물성 제품, 유제	×	

				품, 지방제품		
알긴산	Alginic acid	400	○	제한 없음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	제한 없음	×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402	○	제한 없음	×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511	○	두류제품	○	응고제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508	○	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	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	응고제
오존수	Ozone water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	젤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산화염소(수)	Chlorine dioxide	926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Di-,Tribasic)	339 (i) (ii) (i) (ii)	○	가공치즈	×	
젖산	Lactic acid	270	○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327	○	파티음료	×	
제일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341 (i)	○	밀가루	×	
제이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Dibasic	340 (ii)	○	커피 화이트너	×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Crude Magnesium Chloride (Sea Water)		○	두류제품	○	응고제
젤라틴	Gelatin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젤란검	Gellan Gum	418	○	파티음료	×	

L-주석산	L-Tartaric acid	334	○	포도주	○	포도주 가공
L-주석산나트륨	Disodium L-tartrate	335	○	케이크, 파자	○	제한 없음
L-주석산수소칼륨	Potassium L-bitartrate	336	○	곡물제품, 케이크, 파자	○	제한 없음
주정 (발효주정)	Ethanol (fermented)		×		○	제한 없음
질소	Nitrogen	941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	식물성제품, 유제품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	제한 없음	×	
카제인	Casein		×		○	포도주 가공
탄닌산	Tannic acid	181	×		○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500 (i)	○	케이크, 파자	○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증화제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bicarbonate	500 (ii)	○	케이크, 파자, 액상차류	×	
세스퀴탄산나트륨	Sodium sesquicarbonate	500 (iii)	○	케이크, 파자	×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504 (i)	○	제한 없음	×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503 (i)	○	곡류제품, 케이크, 파자	×	
탄산수소암모늄	Ammonium bicarbonate	503 (ii)	○	곡류제품, 케이크, 파자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501 (i)	○	곡류제품, 케이크, 파자	○	포도 건조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170 (i)	○	식물성제품, 유제품 (탄산칼슘을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	제한 없음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306	○	유지류 (d-토코페롤은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	
트라가칸스검	Tragacanth gum	413	○	제한 없음	×	
퍼라이트	Perlite		×		○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	식물성제품, 유제품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	여과보조제
황산	Sulfuric acid	513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	케이크, 파자, 두류제품, 효모제품	○	응고제
천연착향료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	제한 없음(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 착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 착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	×	
미생물 및 효소제제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	제한 없음(「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한 없음(「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Fortifying nutrients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만 사용할 수 있다)	×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및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종 세척제만 사용할 수 있다.

2.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목 3)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3.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p>○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Inert Ingredients List)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p>	<p>○ 제1호가목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PH 조정 등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p> <p>○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할 것</p> <p>○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일 것</p>

[별표 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 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이 될 것
-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 사.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 아.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 가. 허용물질은 유기농업 등의 원칙 및 예방 원칙(어떠한 활동이 인간 건강·환경을 위협할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예방조치를 한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개정·폐지를 농촌진흥청장(유기농업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다.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유기농업 원칙, 농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자체 전문가심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접수된 신청물질의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분야가 중복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한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보고한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5.11.16.>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합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라. "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 마.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사.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 아. "유해잔류물질"이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 자.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차.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 카.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 파. "시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 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 거. "생산지침서"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

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너.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같은 목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음 가) 또는 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목초를 제외한다):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해당 재배지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1)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

	<p>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p> <p>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을 따른다.</p> <p>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p> <p>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p> <p>나) 적합한 윤작체계</p> <p>다) 기계적 경운</p> <p>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p> <p>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p> <p>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p> <p>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p> <p>아) 동물의 방사</p> <p>자) 덩·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p> <p>차)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거나 공시등 제품을 그 제품의 사용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p>
<p>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p>	<p>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p> <p>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p> <p>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p> <p>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p>

	<p>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p> <p>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7)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8)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p> <p>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p> <p>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p>
<p>마. 기타</p>	<p>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임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이어야 한다.</p> <p>2)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임산물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3)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p> <p>4) 삭제 <2014.10.1.></p> <p>5)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p> <p>6) 유기 종자·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1) 및 2)의 물질과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여야 한다.</p>

3. 유기축산물

<p>심사 사항</p>	<p>구 비 요 건</p>
--------------	----------------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p>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p> <p>2)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3)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p> <p>4)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p> <p>5)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제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p> <p>6)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p> <p>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 <p>8)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p> <p>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p> <p>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p> <p>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p>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p>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p> <p>가) 축사 조건</p> <p>(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p>

-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 (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 (5)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해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
- 나) 방목조건
 -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 3) 유기가축과 비유기 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p>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무항생제 육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나)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자급 사료 기반</p>	<p>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한다.</p> <p>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p> <p>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 가공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p>
<p>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p>	<p>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p> <p>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p> <p>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p> <p>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p> <p>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p> <p>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이 호에 따른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알생산용 및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송아지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는 1)의 해당 전환기간 동안만 급여하여야 한다.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한다.

	<p>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급여를 권장한다.</p> <p>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p> <p>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p> <p>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p> <p>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p> <p>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p> <p>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p> <p>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p> <p>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p> <p>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p>
<p>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p>	<p>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p> <p>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p> <p>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p> <p>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p> <p>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p> <p>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p> <p>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 해당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p> <p>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p> <p>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p>

	<p>니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p>7)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p> <p>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p> <p>9) 4) 또는 6)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아. 운송·도축·가공과정의품질관리</p>	<p>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p> <p>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p> <p>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자. 가축분뇨의 처리</p>	<p>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p>

	<p>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

4. 유기가공식품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요건	<p>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2)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p> <p>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p> <p>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나. 가공원료	<p>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p>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p> <p>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p> <p>다) 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한 제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생산 부족 등으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기가공식품(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것만 해당한다)</p> <p>2) 1)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p> <p>※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p>

$$\frac{I_o}{G-WS} = \frac{I_o}{I_o+I_c+I_a} \geq 0.95$$

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G=I_o+I_c+I_a+WS$)

I_o :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I_c : 비유기 원료(유기식품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_a :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 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 4)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 정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제 7조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5)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가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방법

-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 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 2)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 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5)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 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 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 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 여야 한다.

<p>마. 세척 및 소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p>바. 포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p>사. 유기 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p>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

○ 유기사료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

	<p>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p> <p>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p>
<p>라. 제조시설 기준</p>	<p>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사료"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p> <p>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p>
<p>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p>	<p>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p> <p>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p> <p>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바. 세척 및 소독</p>	<p>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p> <p>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사. 포장</p>	<p>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p> <p>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p> <p>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p> <p>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p>

<p>아. 유기원료 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p>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6.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가. 경영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인증품 취급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p>나. 작업장 시설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

	<p>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p> <p>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3) 작업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해당 작업장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다. 원료관리	<p>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 사용이 정지된 인증품을 포함한다)을 인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표 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p>
라. 취급방법	<p>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유기식품에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p> <p>2)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p> <p>3)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다목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5)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6) 농축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7)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p> <p>8)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p> <p>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p>

	<p>사용</p> <p>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축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p>
<p>마. 저장·포장·운송·수송</p>	<p>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구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p> <p>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5)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바. 생산물의 품질관리등</p>	<p>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인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2) 유기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이 표 제3호아목5) 및 별표 11 제3호사목5)를 적용한다.</p> <p>3) 인증품에는 롯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를 말한다),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p>

7.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가. 경영관리</p>	<p>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p> <p>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p> <p>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날짜[생산의 경우 파종·식재일자 또는 입식일자, 수확일자 또는 집란(集卵)·집유</p>

	<p>(集乳)·도축일자, 포장일자를 포함한다]</p> <p>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수량</p> <p>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과 주소 및 거래관련 계약서</p> <p>2) 1)의 자료는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p>
<p>나. 수량관리</p>	<p>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p>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가. 농산물·임산물

-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과종·식재일, 수확일
- 2) 농산물·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4) 동물용의약품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의사 처방전 또는 의사 처방
매뉴얼
-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
량, 처리방법
- 7)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
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
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
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
·거래처별 판매량
-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함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농"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 유기○○ 또는 유기농○○
나. 유기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다. 비식용유기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 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3. 별표 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식품의 경우

가.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유기", "유기농", "organic" 등의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 장소는 주 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라.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별표 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와 해당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 3)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풋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 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이 제품

-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5.11.16.>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다.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라. 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목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법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p>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p> <p>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p> <p>가)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p> <p>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p> <p>3) 유기축산물</p> <p>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 (별표 3 제3호바2)의 경우는 제외)</p> <p>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p> <p>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p> <p>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p> <p>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p> <p>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p> <p>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p> <p>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p> <p>5) 무농약농산물</p>		
--	--	--

<p>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p> <p>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p> <p>6) 무항생제축산물</p> <p>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p> <p>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p> <p>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p> <p>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p> <p>7) 취급자</p> <p>가)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에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p> <p>나) 유기합성농약이 취급자·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p> <p>다)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p>		
<p>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24조제1항 제3호(법 제34조제4항)</p>	<p>인증취소</p>
<p>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p>	<p>법 제24조제1항</p>	<p>인증취소</p>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법 제34조제4항)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사.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정지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변경
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차.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법 제34조제1항)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카.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법 제34조제5항)	시정명령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실시한다.

[별표 9] <개정 2015.11.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조직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유기농업자재의 제조·유통·판매나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갖추어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2) 인증심사원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일 것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

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 1)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2)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9의2] <신설 2014.10.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32조의2제1항 관련)

자격	경력
1. 「국가기술택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택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6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위 표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별표 9의3] <신설 2014.10.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32조의2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자격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2호	자격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	자격 취소		
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	법 제26조의2제3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 취소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항제4호		
다.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 취소

[별표 10] <개정 2014.10.1.>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 제 1 항 제 1 호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9조 제 1 항 제 1 호의2	지정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 제 1 항 제 2 호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	지정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표 11] <개정 2015.11.16.>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나. 재배 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 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p>(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6)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다목의 재배방법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이어야 하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p>
<p>다. 재배 방법</p>	<p>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p> <p>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p> <p>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그 사용가능 조건에 맞도록 사용하거나 공시등 제품을 그 제품의 사용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p>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p>	<p>1) 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임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p>

	<p>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임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하여야 한다.</p> <p>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p> <p>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p> <p>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p> <p>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p> <p>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6)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p> <p>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p> <p>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p>
<p>마. 그 밖의 사항</p>	<p>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p> <p>3)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 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4) 삭제 <2014.10.1.>
- 5) 무농약종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 한다.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 리 및 단 체 관 리	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같은 한 축사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p>나)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 취급, 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p> <p>다)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 법</p>	<p>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p> <p>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p> <p>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과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p> <p>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p> <p>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p>
<p>라. 전환기 간</p>	<p>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3)의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 제3호마목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p>마. 사료 및 영양관리</p>	<p>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p> <p>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딴제 및 호르몬제</p> <p>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p>
<p>바. 동물복 지 및 질병 관 리</p>	<p>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p> <p>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p> <p>다) 비타민 및 무기질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은 해당 약품 유효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p>사. 운송·도축·가공·파장의 품질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하여야 한다. 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 처리는 별표 3 제3호자목1)부터 4)까지를 준용한다.
분뇨의
처리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별표 3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별표 12]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로 표기할 수 있다.
-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항생제", "(NON PESTICIDE)",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무농약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무항생제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비고

1. 천연·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별표 13]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공시기준

가.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경영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등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정 및 품질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이력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	가) 친환경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2)부터 4)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4)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 사항	검토 기준
1) 원료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2)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3)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p>원료</p> <p>4)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p>5)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p>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p> <p>7)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p>
2) 원료의 특성 및 유래	<p>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출처가 명확하여야 한다.</p>
3) 제조조성비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효성분 검사	<p>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유효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p> <p>2)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p> <p>나)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p> <p>다)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증 수, 동정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p> <p>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2) 유해성분 검사	<p>가)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2) 그 외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나) 병원성미생물과 항생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p>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식물 등에 대한 비해(肥害)·약해(藥害) 시험	가)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나)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배양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마.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공통조건	가)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2) 독성	가)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바.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제조공정	가)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품질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포장지 표기방법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 기준

가. 공통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품질인증 대상 조건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체 또는 식물 등에 대하여 피해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하며, 품질인증제품 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통조건	제1호의 공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원료	별표 1에서 정한 퇴구비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으로부터 유래한 허용물질이어야 한다.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효성분 검사	유효 보증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 다만, 「농약관리법」 이나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	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대상 자재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서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나) 시험 결과 무시비구(無施肥區)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2)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	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 대상자재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서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나) 약효(藥效) 시험 결과 무처리 대비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별표 1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성분[대표물질의 정성(定性)·정량(定量)분석, 유해성분(유해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임의 서류 및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및 품질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	○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유효성분				
①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	○	○	○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	○
③ 천적 검사성적서	○	○	○	○
④ 유효성분에 대한 보증 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	○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	○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	○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서	△	△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	○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	○
나. 품질관리	○	○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7.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	○	○	○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

○: 신청시 제출, △: 필요시 제출

[별표 1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시험·분석 업무범위

- 가.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나.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 가.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시험 분야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시험책임자는 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보존하여야 한다.

3. 시설

-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정실 및 보관실 등을 확보하여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취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장비

-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작물재배시험이나 농자재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장비는 항상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험관리 규정

- 가. 시험에 필요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에 대하여는 오염,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시험실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시험 수행을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같은 날 생산한 같은 품목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생산자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모집단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속하는 부분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법 제41조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5호	지정취소		

나.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등 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4항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등 취소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		공시등 취소		
나) 공시등을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다)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2) 10퍼센트 이상		공시등 취소		
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중 주성분의 검사 결과 가 보증성분함량 미만 으로 검출되거나 효과 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 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 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이 상		경고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2) 10퍼센트 이상 30퍼 센트 미만이거나 미생 물의 보증균수가 1000 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등 취소		
6)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 업자재에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등의 표시사항 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4항 전단	공시등의 표시 변경	판매금지	

다.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 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 등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법 제50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지정취소		
10)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17]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제56조 관련)

1. 표시 도형

가. 표시 도형: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만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도법(도형 표시)

- 1) Grid System(격자구조)에 맞게 표시 도형을 도안한다.
- 2) 유기농업자재 인증마크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3) 문자의 글자체는 나눔 명조체, 글자색은 연두색(PANTONE 376C)으로 표기한다. 다만, 인증기관명은 청록색(PANTONE 343C)으로 표기한다.
- 4) 인증마크 상단부에는 제2호에서 정한 글자를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인증마크 하단부의 유기농업자재의 종류에는 공시등을 받은 구분을 표기한다.
- 5) 인증기관명란에는 해당 자재를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한 인증기관명을 표기한다.
- 6) 인증마크 바탕색은 흰색이고, 인증마크의 가장 바깥쪽 원은 연두색(PANTONE 376C)이며, 유기농업자재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은 청록색(PANTONE 343C), 태양, 햇빛 및 잎사귀의 둘레 색상은 청록색(PANTONE 343C),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

색과 네모 둘레는 청록색(PANTONE 343C)이다.

7) 배색 비율은 청록색 (PANTONE 343C, C:98/M:0/Y:72/K:61), 연두색(PANTONE 376C, C:50/M:0/Y:100/K:0)으로 한다.

8)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9)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표시 문자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나.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3. 공시등 내용

가. 공통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제49조에 따라 발급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1) 업체명·주소·전화번호
- 2)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번호
- 3)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 4) 제조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 5)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 6) 유통기간
- 7) 주성분(원료)명·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 8)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 문자
- 9)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나. 공시품

공통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1)의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 1)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
- 2) 약해(藥害) 또는 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다. 품질인증품

공통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1)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약효(藥效), 비효(肥效) 등] 관련 사항
- 2) 비효(肥效)·비해(葦薺)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라.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의 세부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8]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조직

- 가. 법인으로서 공시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 공시등기관의 장과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법인체를 말한다)을 갖추고 공시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공시등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

- 가. 공시등의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심사원(이하 "공시등 심사원"이라 한다)만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공시등 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씩 6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업무량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공시등 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다. 공시등 심사원은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최근 1년 이내에 법 4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 2)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 3) 수수료를 받고 공시등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공시등의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시등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3. 시설 및 장비

- 가. 공시등기관은 공시등 업무 수행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다. 신청자료와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 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공시등 업무규정

공시등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등 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가. 공시등 업무의 실시방법
- 나. 공시등의 사후관리방법
- 다. 공시등의 수수료
- 라. 공시등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 마. 공시등 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바. 공시등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 사. 공시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 아. 공시등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자. 모든 신청자가 공시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시등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 차.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19] <개정 2014.10.1.>

수수료(제71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관리비

-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2) 공시등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등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다.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

	면제 가능)	면제 가능)	제 가능)
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마.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3. 납부기간 등

-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 공시등 심사 또는 사후관리가 실시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등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 다.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농림축업 자원과 농림축업 환경의 실태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장의 출입조사
2. 조사·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생산자 수
	성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인증구분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 무농약농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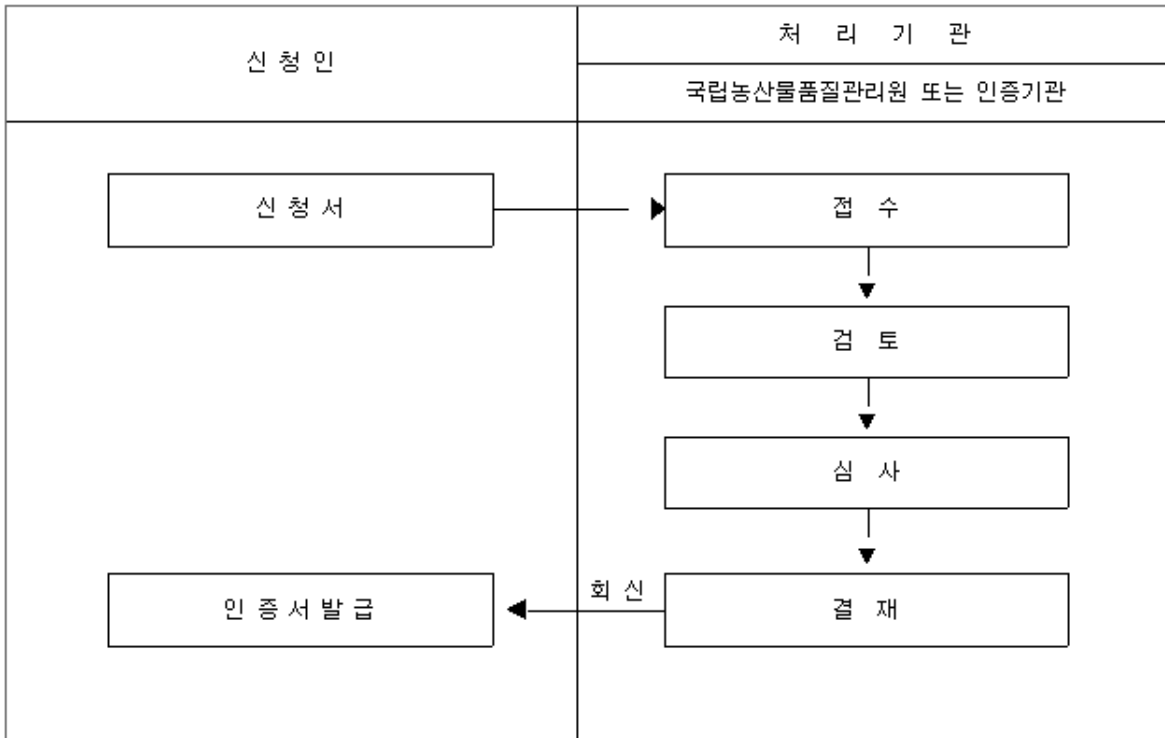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지별로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유기가공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 저장자, [] 포장자, [] 운송자, [] 수입자, [] 판매자
	신청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m ²)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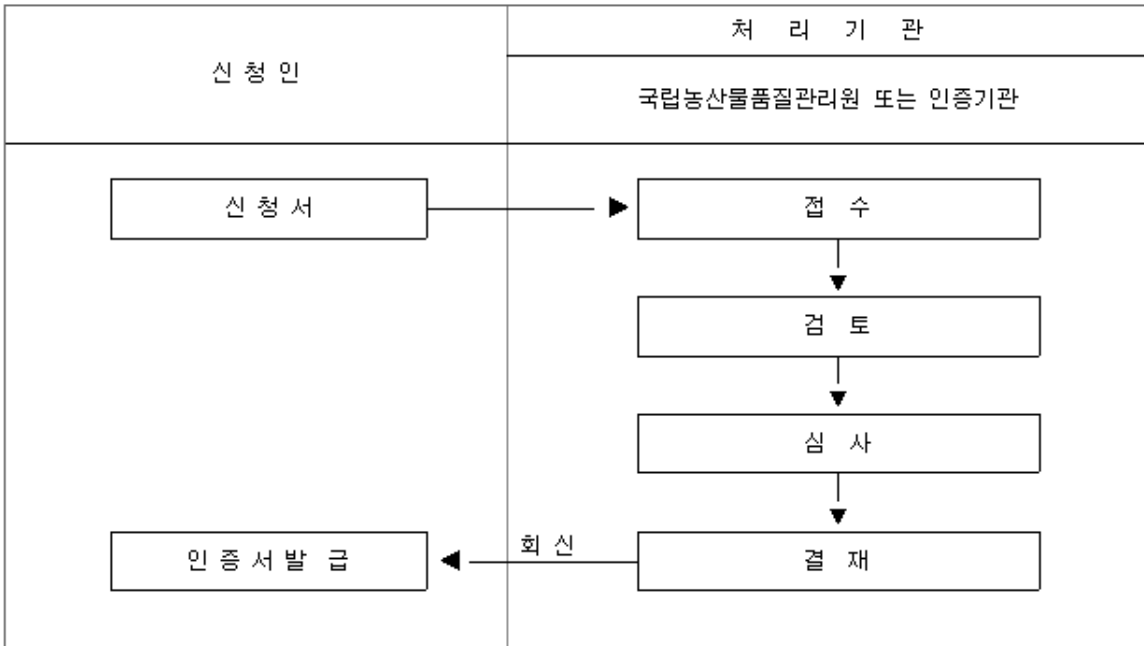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고구마,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임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재배포장			재배 품목	생산계획량 (kg)
소 재 지	지번	면적(㎡)		

3. 재배 작기(作期)

파 종 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4. 경영관리

5. 재배포장·용수·종자

6. 재배방법

7. 생산물의 품질관리

- * 제4호부터 제7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사 육 시 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규모 및 생산계획량

품목별	사육규모(두수)				생산계획량 (마릿수, 갯수, ♀)
	계	성 축	육성축	자 축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m ²)	

3. 생산·취급 계획량(kg)

품목명	계 획 량	품목명	계 획 량	품목명	계 획 량

4. 제조·가공 또는 취급방법

5. 원료 및 첨가물 관리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7.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의4호서식] <신설 2014.10.1.>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B: 사전신고[]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처리기한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		(FAX :)

제조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		(FAX :)

제품명	명 칭	성분등록번호	HSK번호
	한글명	신고 총중량/총금액 kg/ US\$	

제품 유형	용도
-------	----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	--	--	--

유통기한	년 월 일 (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	-----

제조회사명	주소
-------	----

수출회사명	주소
-------	----

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	수입항	입항일 년 월 일
------------------	-----	--------------

보관참고	(전화번호:)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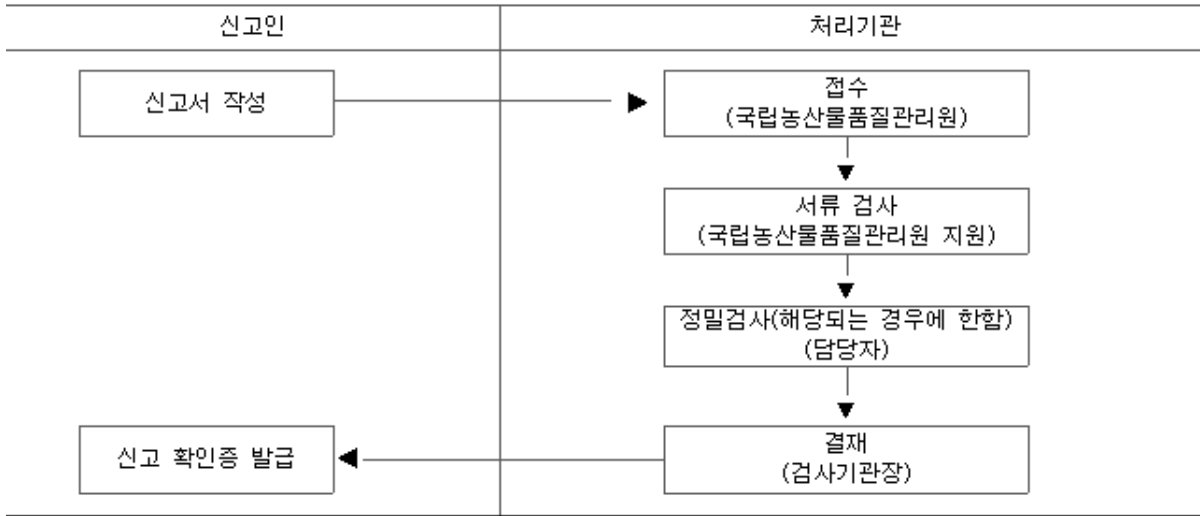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 증서 사본 2. 인출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

(제2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4.10.1.>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년 월 일
수리번호		수리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제조업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명칭			
총수량	(단위:)	총중량	(단위: kg)
총금액	(단위: US\$)	화물관리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업자	
HSK 번호		검정 종류	
용도		유통기한 만료일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제 품 내 역

NO.	제품 명칭	화물관리번호	수량(단위:)	중량(단위: kg)	금액(단위: U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의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h1 style="margin: 0;">인 증 서</h1>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 margin-top: 5px;">《생산지용》</div>			
인증 구분		유효기간	
생 산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인증 부가조건			
<p>「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산물·임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80px;">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orange; margin: 0;">직 인</p> </div> </div>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0.1.>

발급번호: 제 호 <h2 style="text-align: center;">거래인증서</h2> <h3 style="text-align: center;">(Transaction Certificate)</h3>									
공급자	업체명								
	주소								
구매자	업체명								
	주소								
거래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품목</td> <td style="padding: 5px;">인증종류</td> </tr> <tr> <td style="padding: 5px;">수량</td> <td style="padding: 5px;">인증번호</td> </tr> <tr> <td style="padding: 5px;">롯데번호</td> <td style="padding: 5px;">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그 밖의 사항</td> </tr> </table>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롯데번호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롯데번호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거래 내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210mm×297mm[텍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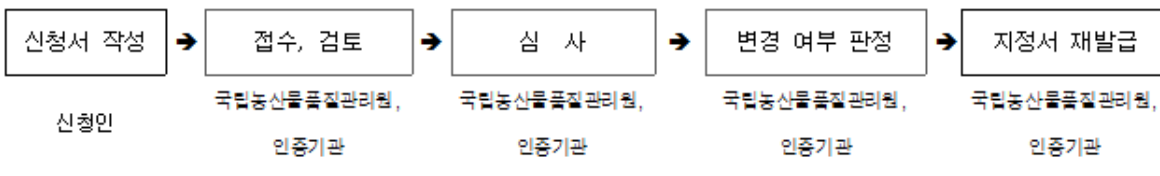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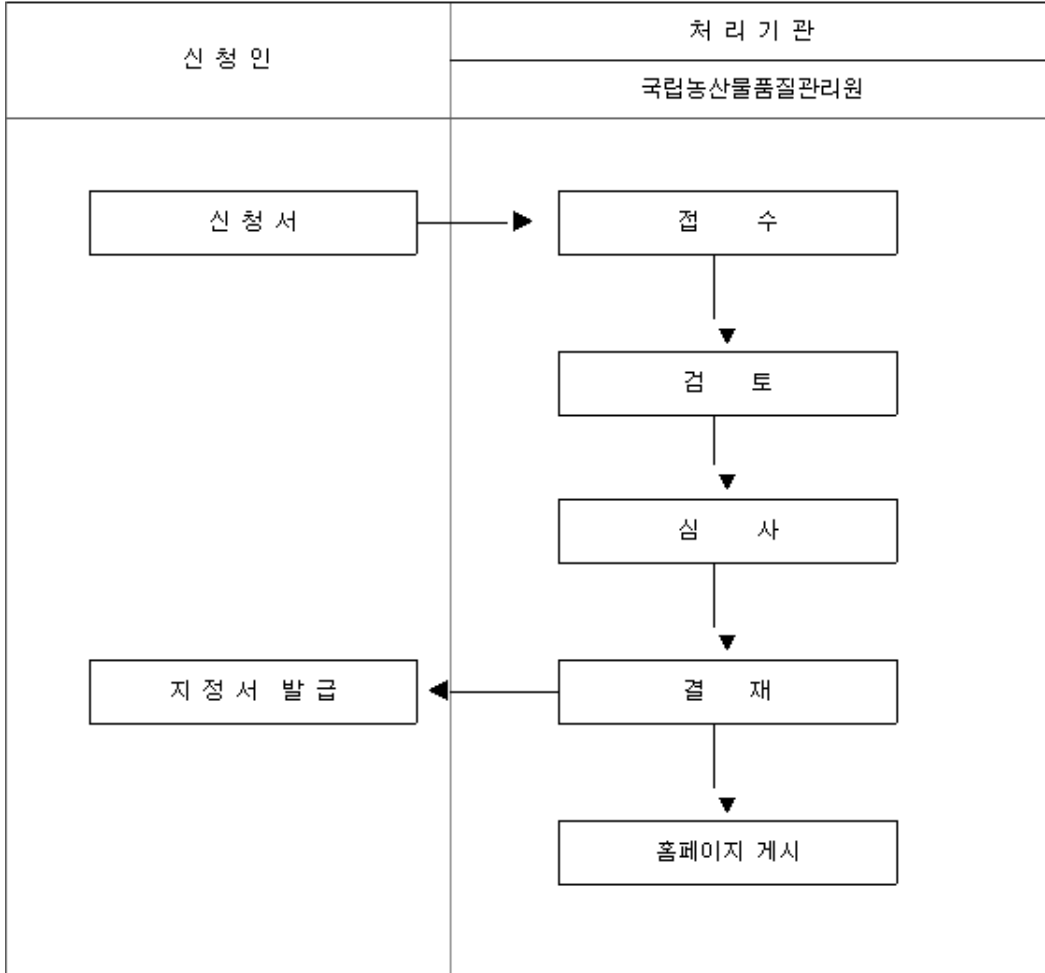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4.10.1.>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근무처 소재지	근무처 전화번호

심사업무의 범위

「국가기술훈자력법」에 따른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로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14.10.1.>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안 쓴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55mm × 85mm (PET-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인증기관 [] 휴업 신고서 [] 폐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명	지정 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
-----------	---------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5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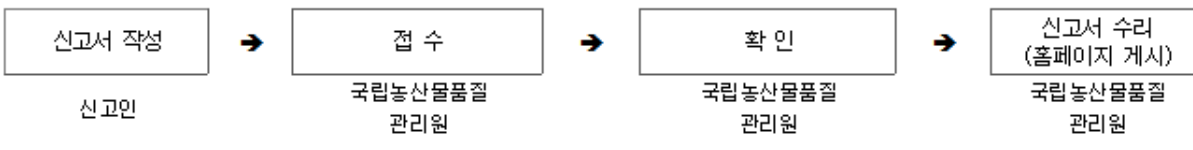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

승계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성명(개인 사업자인 경우)	전 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 월일)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讓受) <input type="checkbox"/> 합병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 장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등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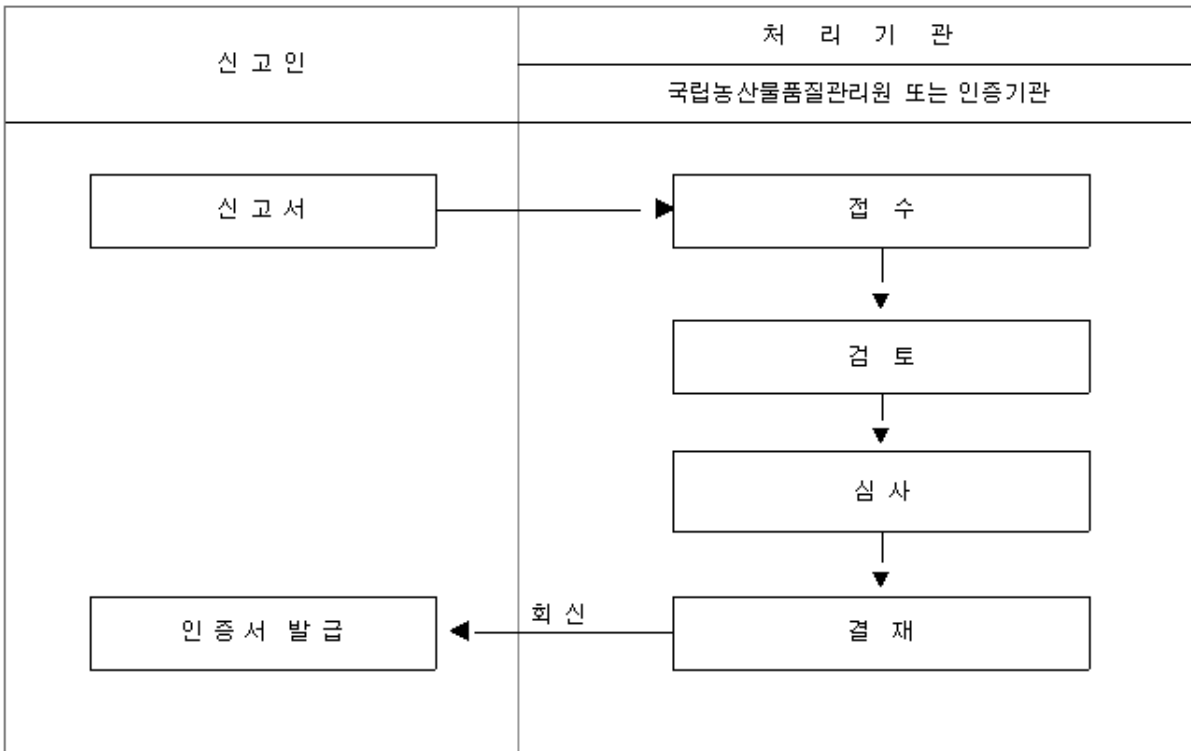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8. 인증 품목은 승계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9.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취급 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

승계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설립 목적	
승계 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승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양수(讓受) <input type="checkbox"/> 합병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3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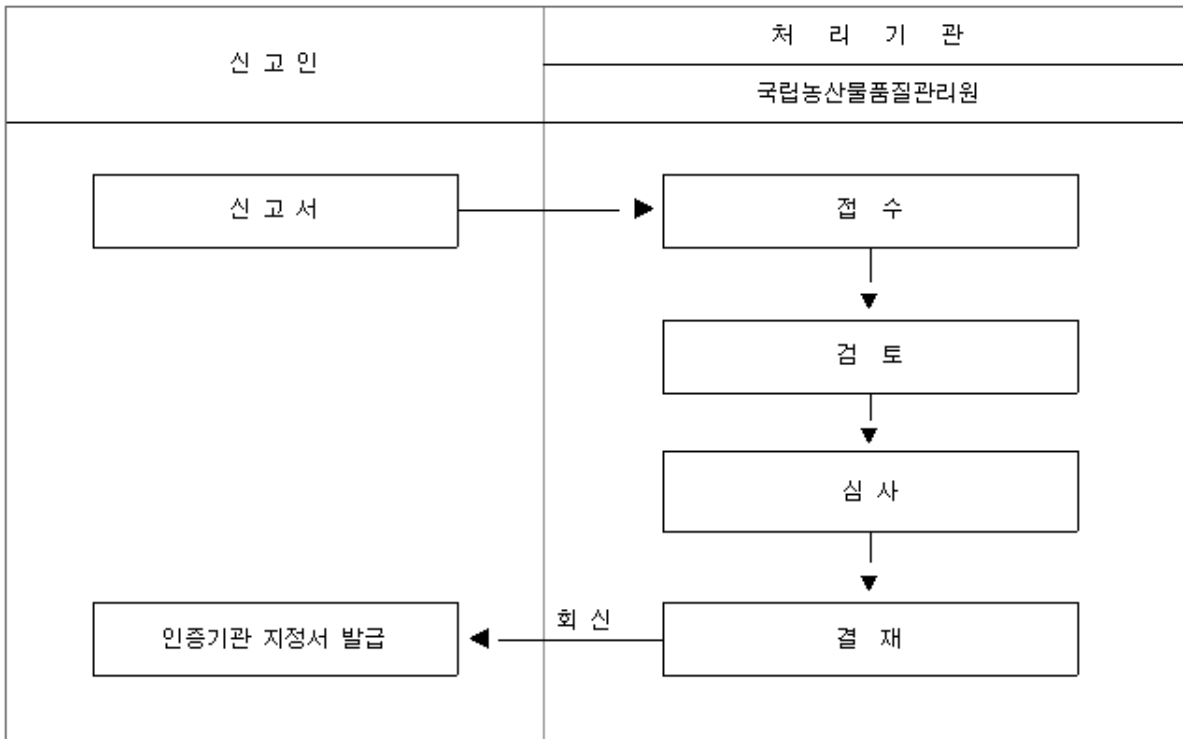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국어로 번역(소리나는 대로 번역해야 하며, 뜻도 혼역을 해서 는 안 됩니다)한 승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원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 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7. 승계 사유란은 해당 승계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 공시 [] 품질인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신청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 구분	[] 국내	수입국:
		[] 수입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주 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인증기관:
		함량(%)	
	상 표 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38조제 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48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 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3.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수수료 규칙 제 71조 및 별표 19 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을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등 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공시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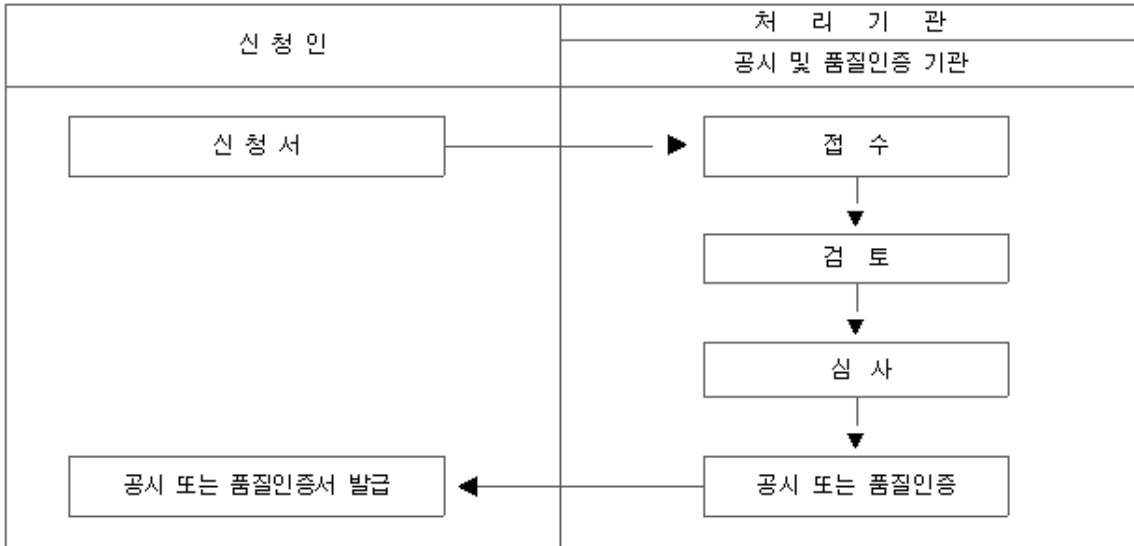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자재의 명칭란에는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6. 생산구분란에는 수입은 수입원제품 및 수입원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7. 주성분(원료)란에는 성분(원료)명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상표명란에는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9. 자재의 구분란에는 신청하려는 자재의 용도에 "√" 표시를 하면 됩니다.
10. 세부 내용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사용방법, 사용량, 안전사용시기,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유기농업자재 [] 공시
[]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 신청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 자재의 명칭:
3. 자재별 생산시설(㎡):
4. 자재별 생산설비:
5. 자재별 생산 계획량(kg/년):
6. 원료에 대한 수급계획 및 가격:
7. 원료 품질관리 계획:
8. 자재별 제조공정:
9. 품질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 계획:
10.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계획: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기농업자재 [] 공시 []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이전신청 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 구분	[] 국내		
		[] 수입	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상표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재심사 신청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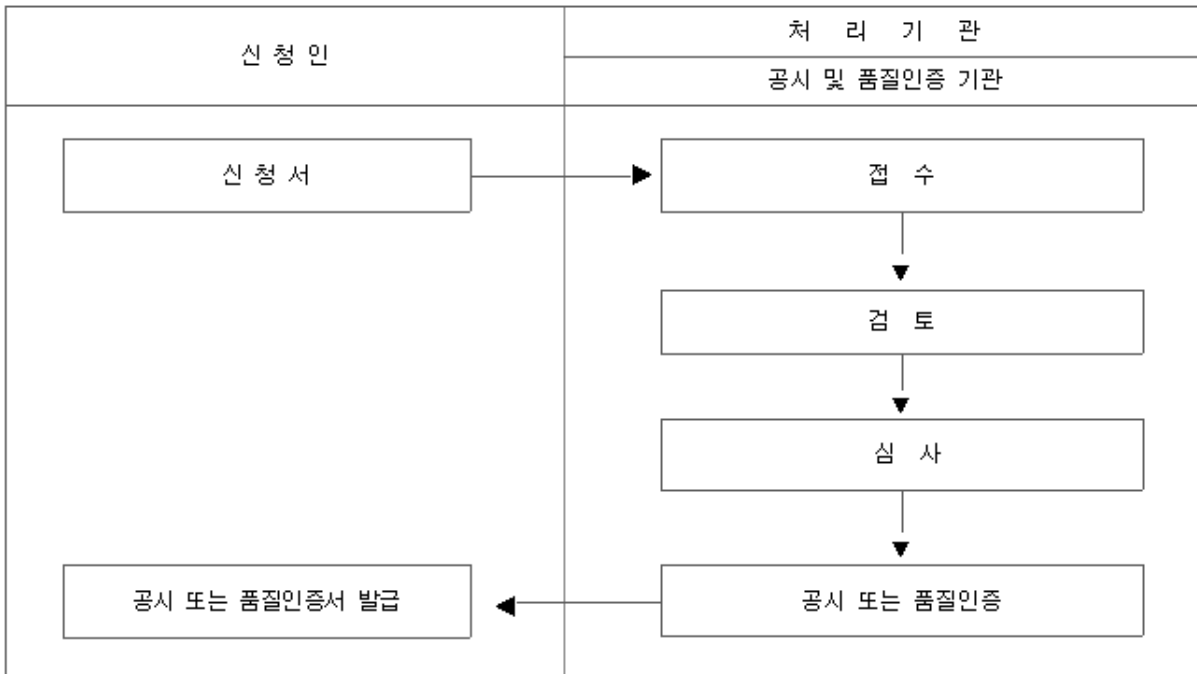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재의 명칭란에는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 생산구분란에는 수입은 수입완제품 및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주성분(원료)란에는 성분(원료)명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표명란에는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자재의 구분란에는 신청하려는 자재의 용도에 "√" 표시를 하면 됩니다.
- 세부 내용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사용방법, 사용량, 안전사용시기,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재심사 신청사유란에는 자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 공시 품질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등 내용	공시(품질인증)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20	~ 20

변경신청 사항	변 경 신 청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38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1점.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1점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을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등 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공시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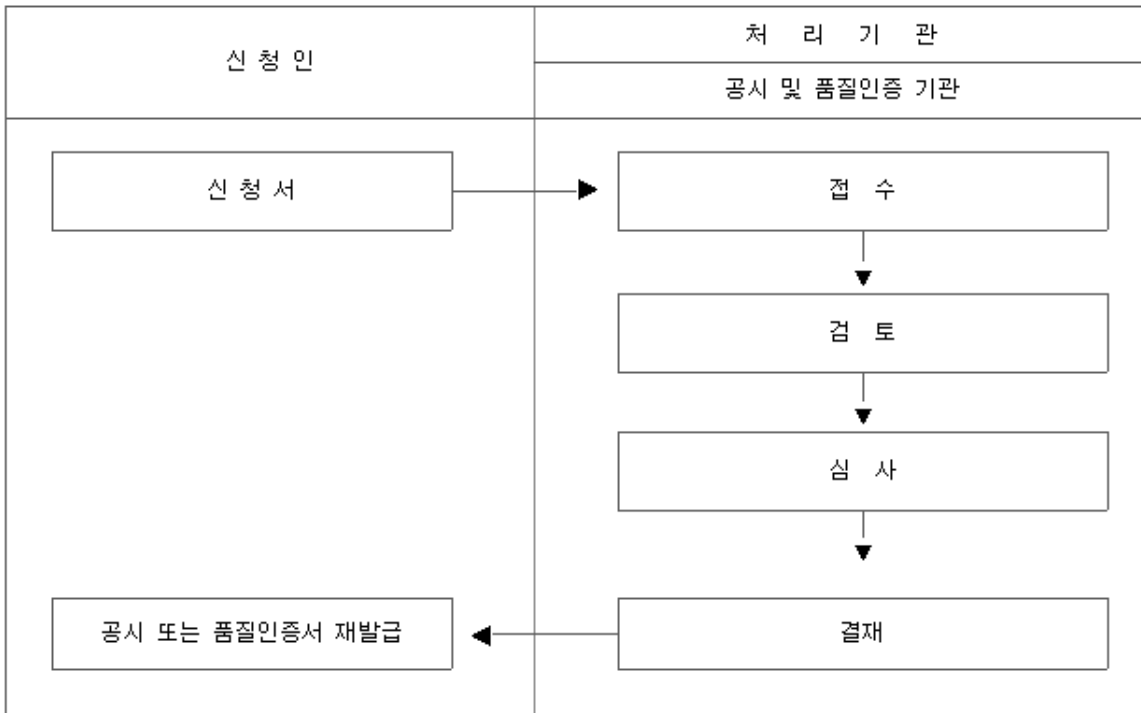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공시(품질인증)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을 사용합니다.
7. 상표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등에 등록된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9.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10. 변경신청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11.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2.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사항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연월일	사용방법				비료등록 사항	원료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량	처리방법			

병해충관리

연월일	사용방법					농약 등록사항	원료 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적용 병해충	사용시기 (횟수)	사용량	처리방법			

※ 적용 병해충: 품질인증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사항

(뒤쪽)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록자(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유기농업자재 [] 공시 [] 품질인증 공고사항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공고일	업체명	공시 번호 (품질 인증)	자재의 명칭 (원료)	자재의 구분	상표명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비료 등록 여부	유효 기간	주소	가격
							적용대상 (작물 명)	사용 시기	사용 량	처리 방법				

○ 병해충 관리

공고일	업체명	공시 번호(품질 인증)	자재 의 명칭(원료)	자재 의 구분	상표 명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농 약 등록 여부	유효 기간	주소	가격
							적용 대상 (작물 명)	적용 병해 충	사용 시기(횟수)	사용 량				

※ 적용 병해충: 품질인증인 경우에만 해당함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 공시 품질인증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등 내용	공시(품질인증)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3.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을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등 내용을 농촌진흥청 및 공시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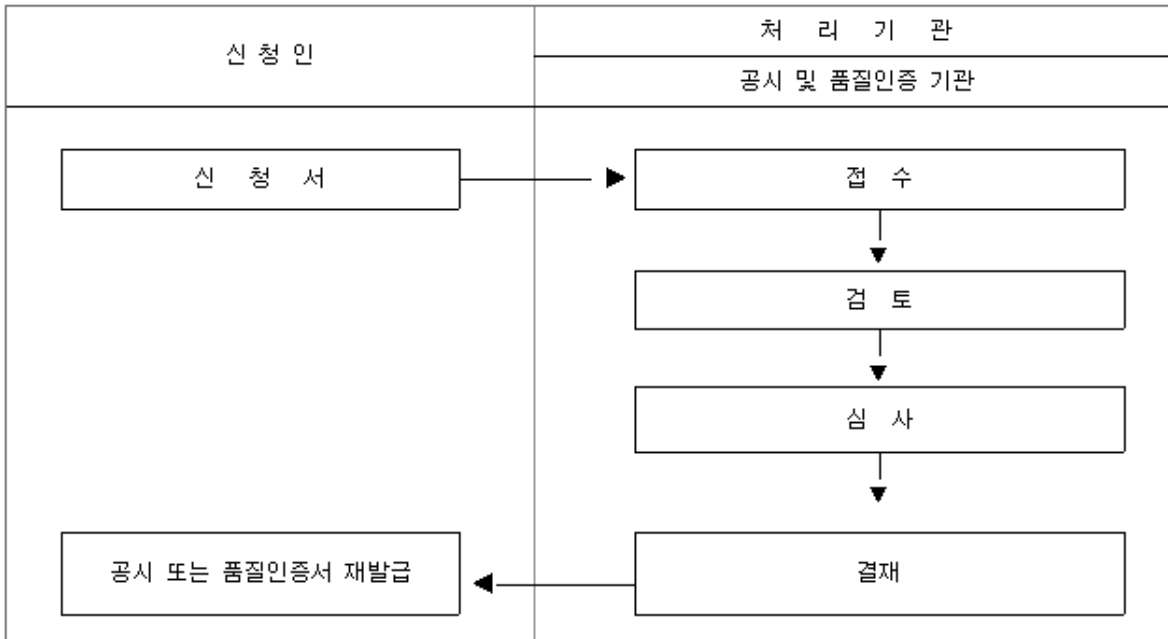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공시(품질인증)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7. 상표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9.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10. 주성분(원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성분(원료)의 종류별 함량(사용량)을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단위: 톤)

유기농업 자재의 종류	제품명 (상표명)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A)	상반기	하반기	계(B)	

끝.

발 신 업 체 명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 송()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유기농업자재 [] 공시
[] 품질인증 원료 수급대장**

공시번호(품질인증)		최초 공고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소(사업장)					
자재의 명칭					
자재의 구분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공시·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원 료 구 입 내 역					
연월일	원료종류	구입량	구입처		비 고
			업체명(이름)	주소(전화번호)	
<p>[작성방법] 공시(품질인증)번호부터 공시등의 유효기간까지의 작성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원료구입내역의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한 일자 기재, 원료의 이름, 원료를 구입한 량을 현물 중량 단위로 기재(부피단위를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음), 원료를 구입한 업체명과 소재지(시·도·시·군·구), 전화번호를 기재, 비고란에는 원료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 보관</p>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 력	지정 신청 분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 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지정 기준	시설명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 시험				
		잔류 시험				
		독성 시험				
장비대수 (명세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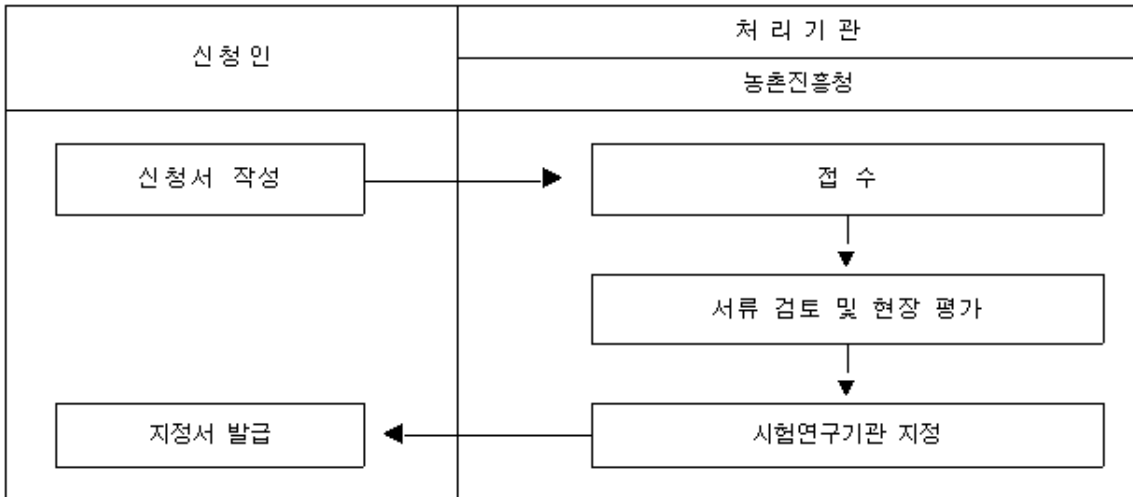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5. 지정항목란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려는 지정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6. 인력란에는 지정 받으려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채용한 시험가능 인력을 적습니다.
7. 시설명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장소, 시험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8. 장비대수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 기자재의 종류 및 대수를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지정분야:
5.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 시험연구의 지정분야별 인력

자재분야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분석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 시설

사무실	실험실	시료보관실	시험포장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신고 내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시등 분야	[] 토양개량·식물생육, [] 병해충 관리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식물생육	병해충 관리	그 밖의 사항
	인원수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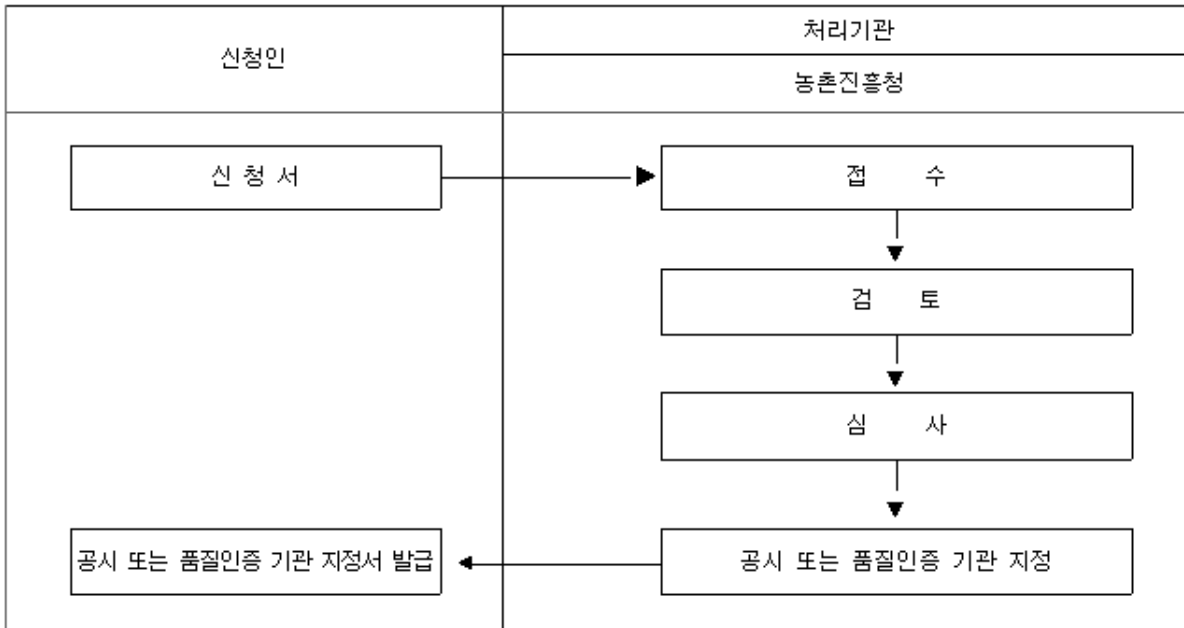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공시등분야란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하려는 유기농업자재의 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인력란에는 지정받으려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7. 설립 목적란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른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목적을 기재합니다.
8. 설립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공시등 분야:
5. 유효기간:
6.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210mm×297mm[택상지 120g/㎡]

(뒤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 조직

부서명							
인원							

○ 공시등 분야별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식물생육	병해충 관리	비고
인원			

○ 시설

시설 종류					
규모(m ²)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20 까지	
변경신고 (신청)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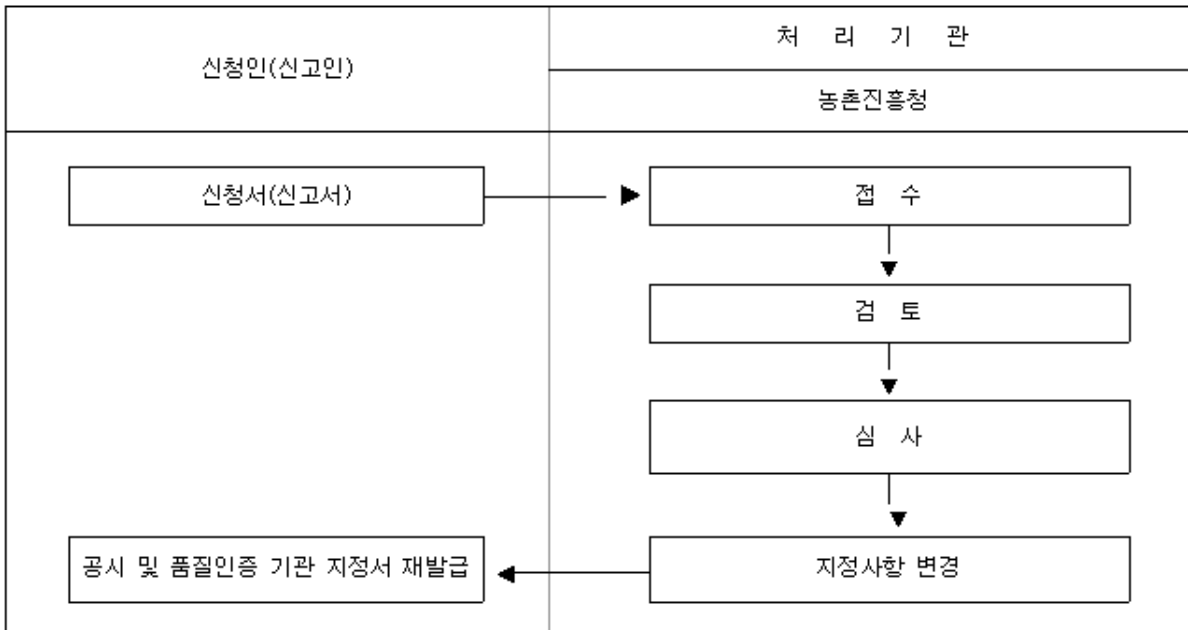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 휴업 [] 폐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20 까지

신고사항	휴업·폐업기간 20 ~ 20 까지
	사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2.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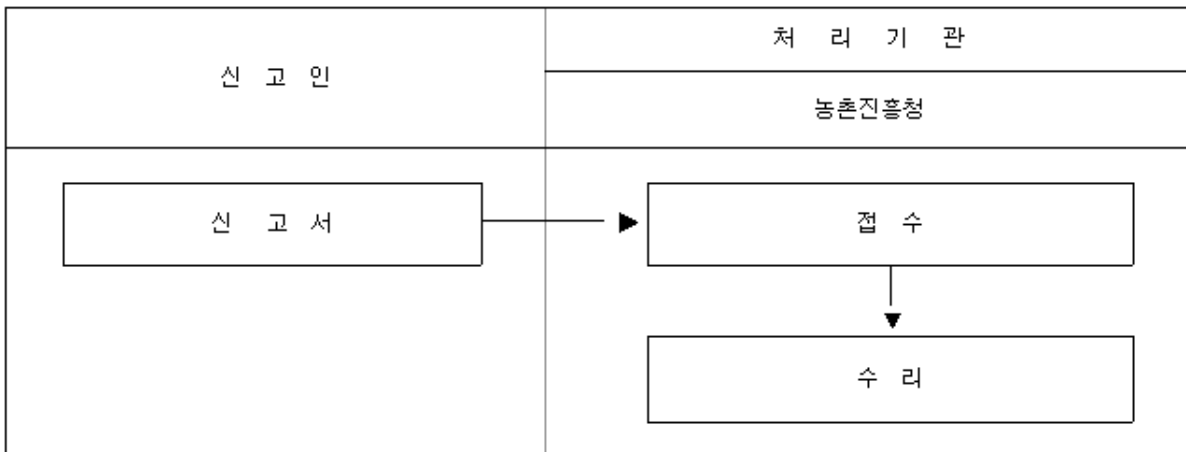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8. 휴업·폐업기간란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하며,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려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9. 사유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출서류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공시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농촌진흥청에 제출할 문서, 서류 또는 정보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제 호

유기농업자재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해철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보존용지 (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유기농업자재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조사·확인을 위한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 확인 및 공시등 기준 적합성 조사
3.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 공시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고자 (승계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유기농업 자재 (승계대상)	구 분	공시(품질인증) 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공 시					
	품질인증					
	승계사유	[]양도 []상속 []기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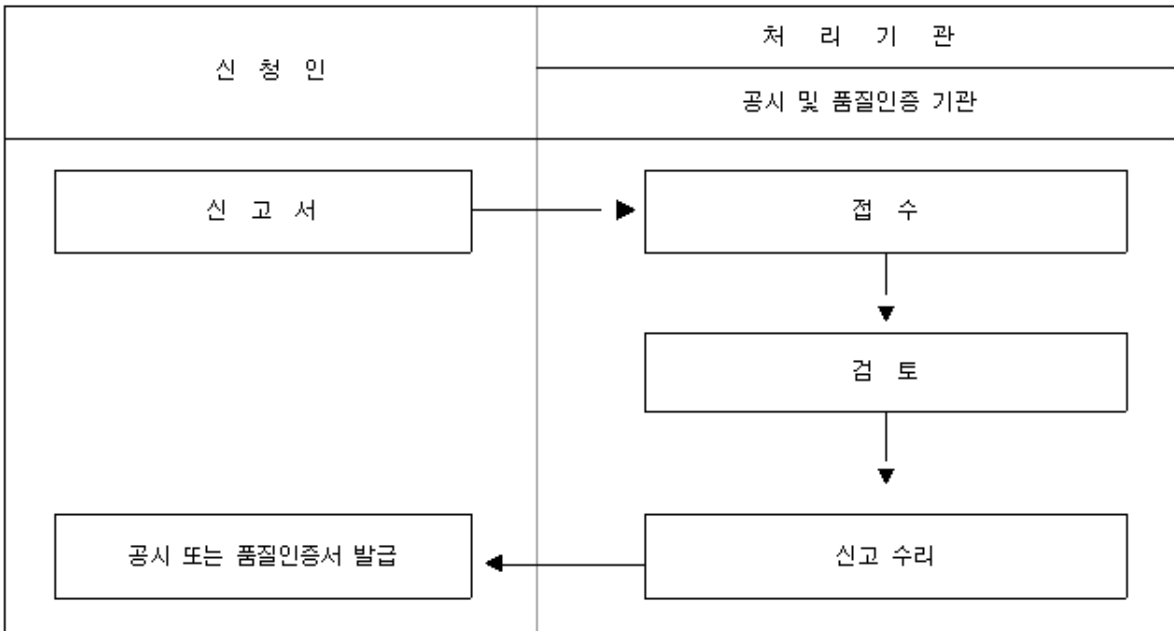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인(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승계 전 및 승계 후란에는 승계전·후의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6. 유기농업자재(승계대상)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공시들이 된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및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7.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X"를 표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5.11.16.>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자 (승계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사항 기관명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대표자			
승계사유	[]양도 []상속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 의 서

1. 공시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등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등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등 기관의 지정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자(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4. 승계사항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